

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농막 설치 허가기준 마련 및 운영

- 2021. 06. 24. 농막 설치 허가기준 법률자문 의뢰 및 회신
 - 회신내용 : '재량의 일탈 및 남용 사항 없음' 고문변호사 3인 의견 일치
- 2021. 06. 28.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 고시알림(환경부)
- 2021. 06. 29. 농막 설치 허가기준 검토보고
- 2021. 07. 20. 농막 설치 허가기준 알림(센터→성남, 광주, 하남)
- 2022. 01. 14. 남한산성내 농막 1개소 축조신고 업무협의(광주→센터)
- 2022. 01. 27. 농막 축조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 심의
 - 의견수렴 결과 : 센터의견인 '허용 불가 처리' 적정

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조성(자연환경 복원) 계획 수립 및 추진

- 2021. 09. 15. 남한산성 도립공원 녹지조성 계획 도지사 방침결재
 - 소요예산 : 241.6억원(토지매입 145, 녹지조성 96.6)
 - 사업기간 : 2023~2027년(5년간)
- 2021. 10. 25.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알림(예산담당관→센터)
 - 심사결과 : 조건부(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) 추진
- 2022. 03. 31.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(도의회 본회의) *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2022. 05. 26. 공원시설 결정고시

향후계획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 추진

개선효과



- 농막 설치 허가기준 마련 및 운영으로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무분별한 농막 등 난개발 방지를 통해 역사 · 생태적인 경관 유지 및 일관된 인허가 처리 시행
- 남한산성 성곽 내 경관이 불량하고 농막 건축이 허용된 농지를 매입 후 녹지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 문화재 배후경관 개선 · 보전
- 녹지조성으로 자연생태 가치를 보존하고, 휴양 · 체험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,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02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

추진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 ☎ 031-8008-4932

개선배경



- (규제지역) 물가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지정
 - (투기과열지구) 주택 투기가 성행(우려)하여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한 지역
 - (조정대상지역)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(우려) 되어 대응이 필요한 지역
- (적용규제)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대출 · 세제 · 전매제한 등 규제 적용
 -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 필요

개선내용



- 국토부 주거정책심의회의 의결로 경기도 일부 시 · 군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해제

[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현황]

구 분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
'22.11.14 이전	14개(12개 市) 지역 과천, 광명, 하남, 성남(분당, 수정), 수원, 안양, 안산(단원), 구리, 군포, 의왕, 용인(수지 · 기흥), 동탄2	28개(20개 市) 지역 과천, 광명, 하남, 성남, 구리, 안양(동안 · 만안), 의왕, 고양, 수원(팔달 · 영통 · 권선 · 장안 · 광교지구), 용인(수지 · 기흥 · 처인), 남양주, 화성, 동탄2, 군포, 부천, 안산, 시흥, 오산, 광주, 의정부, 김포
'22.11.14 이후	5개 지역 · 지구(4개 市) : 과천, 광명, 하남, 성남(분당, 수정)	

* 일부 시 · 군의 세분화된 지역표기 생략



2022. 경기도 주택시장 동향분석(10회)

경기도 내 규제지역 해제 추진계획 수립

경기도 내 불합리한 규제지역 지정 해제 관련 국토부 건의(5회 이상)



● (대출 규제 완화)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, DTI(총부채상환비율) 완화('22년 11월 기준)

- 투기과열지구 해제 : LTV 비율 완화 0(15억 초과)~40%(9억 이하) ⇒ 70%
- DTI 비율 완화 40% ⇒ 50%(1주택자) ~ 60%(무주택자)
- 조정대상지역 해제 : LTV 비율 완화 30(9억 초과)~50%(9억 이하) ⇒ 70%
- DTI 비율 완화 50% ⇒ 50%(1주택자) ~ 60%(무주택자)

● (세제 혜택) 양도소득세 등 완화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

● (전매 제한 해소) 주택 매입시 발생하는 전매 행위 제한 규제 완화

● (청약) 재당첨, 청약 자격 완화

[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407호]

[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408호]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408호

『주택법』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4일

국토교통부 장관

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

1. 지정해제 지역 : 경기도 성남시 일부(중원구), 동탄2택지개발지구, 구리시, 안양시 동안구·만안구, 광교택지개발지구, 수원시 팔달구·영통구·권선구·장안구, 용인시 수지구·기흥구·처인구, 의왕시, 고양시, 남양주시, 화성시, 군포시, 부천시, 안산시, 시흥시, 오산시, 광주시, 의정부시, 김포시, 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연수구·남동구·부평구·계양구·서구, 세종특별자치시

2. 해제일 : 2022년 11월 14일

3. 효력발생시기 :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*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

시·도	현 행	조 정(2022.11.14.)
서울	서울특별시 전역(25개구)	좌동
경기	과천시, 성남시, 하남시, 동탄2택지개발지구 ^{주1)} , 광명시, 구리시, 안양시(동안구, 만안구), 광교택지개발지구 ^{주2)} , 수원시(팔달구, 영통구, 권선구, 장안구), 의왕시, 고양시, 남양주시 ^{주3)} , 화성시 ^{주4)} , 군포시, 부천시, 안산시 ^{주5)} , 시흥시, 용인시(수지구, 기흥구, 처인구) ^{주6)} , 오산시, 광주시 ^{주7)} , 의정부시, 김포시 ^{주8)}	과천시, 성남시 ^{주11)} , 하남시, 광명시
인천	옹구 ^{주9)} 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	전역 해제
세종	세종특별자치시 ^{주10)}	해제

* 주1) 중원구 제외, 이외의 주석표시 생략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407호

『주택법』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4일

국토교통부 장관

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

1. 지정해제 지역 : 경기도 수원시, 안양시, 안산시 단원구, 구리시, 군포시, 의왕시, 용인시 수지구·기흥구, 동탄2택지개발지구

2. 해제일 : 2022년 11월 14일

3. 효력발생시기 :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*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

시·도	현 행	조 정(2022.11.14.)
서울	서울특별시 전역(25개구)	좌동
경기	과천시, 성남시 분당구, 광명시, 하남시, 수원시, 성남시 수정구, 안양시, 안산시 단원구 ^{주1)} , 구리시, 군포시, 의왕시, 용인시 수지구, 용인시 기흥구, 동탄2택지 개발지구 ^{주2)} 과천시, 성남시 분당구, 성남시 수정구, 광명시, 하남시	

주1) 대부동동, 대부남동, 대부북동, 선감동, 풍도동 제외

주2) 화성시 반송동·석우동, 동탄면 금곡리·목리·방교리·산척리·송리·신리·영천리·오산리
·장지리·중리·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